



## 로스쿨의 과제와 전망

이 영 준 |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 I. 사회구조변화의 신호로서 법학 전문대학원

2004년 한 해 내내 사법개혁위원회는 가동되고 있었지만 무엇 하나 감을 잡을 수 없는 혼미한 상황에서 동년 9월 4일 대법원에서 내놓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에 관한 안은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함은 물론 전국의 법과대학을 발각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물론 당시로서 대법원의 안이 사법개혁위원회의 안은 아니었으나 좀 뒤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법개혁위원회는 대법원의 안을 그대로 반복했을 뿐이다. 동년 10월 4일 사법개혁위원회 제21차 전체회의는 법조인 양성과 선발의 개혁방안으로서 개선의 기본방향에 관한 결정절차에 들어가 대법원이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안과 대한변협이 제출한 현행제도 유지·개선안, 그리고 위원 1인이 제안한 국립법률대학원안에 대한 표결을 한 결과 13 : 2 : 0, 기권 1로 2/3이상의 찬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안)

을 채택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은 오른 것이다.

지금 우리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데는 참담한 법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가 양성제도의 핵심인 사법시험제도는 우리사회에서 지배계급의 구성원리이자 국민들에게 있어 지향해야 할 삶의 지표로 인식되는 바람에 세칭 일류대학의 비법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대학은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고시 낭인이 양산됨으로서 국가적 인력낭비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이래 로스쿨이 논의된 지 벌써 10년이 다되도록 이렇다 할 대책은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첫째, 사법시험의 폐해로부터 일반대학들을 구출해 대학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요, 둘째, WTO 발효에 따른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법조시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법률가들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요, 셋째, 국민들이 저렴하고 경쟁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음으로 해서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러한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특정 지역이나 직업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음으로 해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사법개혁의 이유를 충족시키는가? 일반적으로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최선의 선택인지의 여부를 떠나 선택적 대안이 없는 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의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과 관련하여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관한 것이다. 한 해에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현재의 수준으로 묶어두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법조계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즉 개혁이나 반개혁이냐의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 II.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기준과 인가기준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하

설립심사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정부관계자,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립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설립기준은 법조 삼륜 및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관여하도록 되어있고, 설립인가는 가칭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2원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설립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인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인가권자와 설립기준설정자간의 권한조정문제다. 예를 들어 설립기준에 못 미치는데 불구하고 인가를 받았을 경우 설립기준설정자는 설립인가자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설립기준 충족시 인가를 못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한 일이다. 이는 결국 설립에 관한 준칙주의로 귀결짓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법적 유희의 백미가 입학총정원제에 있다. 설립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입학총정원에서 벗어나면 인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라는 이름의 자의가 횡포를 부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대학인 내지 법학자로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법개혁은 커녕 법조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입학총정원 숫자는 거론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바도 없기 때문이다.

위의 무리수를 합리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뜻이 있다. 설립기준의 설정이다. 설립기준이 정해지면 당연히 공시가 되어야 하며, 공시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법적인 상식이다. 분명히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학년도 신입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했고, 입시공고는 1년 전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006년 말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선정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2006년 전반기까지 설립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설립신청서 작성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이라고는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삼륜 및 한국 법학교수회장이 설립기준을 불쑥 내놓을 경우 어떠한 기준이 나오리라고 보는가?

이는 매우 부정적인 사고에 근거한 떨구기 위한 기준, 즉 기존의 세칭 잘 나가는 법대들의 인적·물적 기준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논의 자체가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사법권력 세습의 독식을 위해 사전에 잘 짜여진 법조계와 특정 대학들간의 야합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앞날은 뻔하다.

### Ⅲ. 법학전문대학원과 입학총정원제

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가는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 입학총정원은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전혀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조계

일각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 문제는 법조인력 충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주어진 법학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법학교육의 필요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주체들이 판단해야 될 교육의 문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총정원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선행적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부기관 부설 연수기관 내지 훈련기관이 아니라 대학교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입학생 거의 전부가 변호사자격을 획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변호사자격을 취득한다는 것과 변호사 영업을 한다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선행적 개념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대학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최후까지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패자부활이 인정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 내지 인류문명발달의 기본적인 힘인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비록 전문직업학교를 지향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속해 있는 한 대학의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성격을 전혀 달리 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볼 때 왜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자격 획득숫자 거의 그대로를 입학총정원으로 정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적정 변호사의 숫자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변호사자격획득 제한의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만약 이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법조인 양성을 단순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과정을 통한 양성의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나의 교육기관에 의거 법조인과 법학자가 동시에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법과대학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숫자적 제한이라는 것이 기존 법조인들의 영업권확보를 위한 교육책이라면 매우 수줍어하면서 사정을 해야 할 일이지 서슬이 퍼래서 호령할 일이 아니다. 법원이 존재하는 것도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도 모두 국민을 위해서이다. 지금은 사법개혁적 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나가야지 만에 하나 특정 직역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궤변을 일삼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국민은 값싼 변호사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으로 내놓는 숫자는 연구자마다 차이—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편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있지만 대략 3,000명에서 5,000명 선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법과대학의 입학정원이 12,000명 선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적게는 1/4수준으로 많게는 1/2이하로 축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변호사자격 취득률을 50~60% 정도로 하는 것에 많은 법학교육자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적게는 년 1,500명 내지 많게는 3,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을 때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통일한국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요, 국

제경쟁력 있는 인력을 자생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Ⅳ.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교육 개혁문제

사법개혁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더구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것은 기존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이 된다. 이 점이 법학교수들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부 법학교수들 중 우리들이 한 잘못이라고는 한 눈 안 팔고 열심히 가르친 죄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기도 하다. 과연 그럴까?

비단 법과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교육 전체가 최근 들어 국민적인 외면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인가? 왜 우리는 국민적인 외면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범위를 좁혀 법과대학만 보더라도 법학교육은 법조인 양성 내지 직업선택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독불장군처럼 저 혼자만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지난날 고시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절간으로 들어가야 했고, 오늘날은 신림동으로 들어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학원을 따로 다녀야 했다. 그렇다면 한 눈 안 팔고 열심히 무엇을 가르쳤단 말인가? 우리는 법학교수가 아니라 법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 집단이었던 것이다. 철저히 현실을 외면한 채 고담준론만을 열심히 학생에게 뇌까리며 세상을 조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나 아닌지, 여기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전대미문의 과제가 던져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과대학은 교양법학에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법률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법조인은 철저하게 시험에 의거 선발되었고 그 준비는 학생의 개인적 재능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학생은 자기가 준비해서 법조인이 된 것이지 법학교육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 법학계와 법조계는 서로 별개의 세계가 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법조인 양성을 단 순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과정을 통한 양성의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나의 교육기관에 의거 법조인과 법학자가 동시에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법과대학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설립될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의 법과대학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적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현재의 법과대학과 달라야 함은 물론 교

수요원의 질과 양도 현격히 달라져야 한다. 의견상 변하는 것은 제도이지만 변하기를 요구 당하는 것은 바로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모든 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이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모든 법학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될 필요도 없고, 또한 될 수도 없음을 대학관계자들이 의연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법학교육개혁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고 본다. ■■

#### 이영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법학박사학위 취득 후 경희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재직 중 미국 듀크 로스쿨 방문연구교수를 지낸 바 있고, 더 헤이그 아카데미의 국제법 공·사법과정을 마쳤다. 통일원자문위원, 대한국제법학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이다. 주요 저서로서는 『법학대의』, 『국제법개설』, 『국제환경법론』, 『국제경제법론』 등이 있다.